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5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정혜경·백승아·서미화

허성무 · 전종덕 · 이재강

김 윤・한창민・윤종오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근로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거나 많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그밖의 유급 휴일·휴가를 근로일수에 포함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 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 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 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 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후단 -----. 이 경우 신설> 근로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 <신 설> 한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다만, 1일의 근로시간 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거나 많은 근로일의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 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 <신 설> 른 유급휴일,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단 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 계약에서 정한 그 밖의 유급

	<u>휴</u> 일·휴가를 근로일수에 포		
	<u> 함할 것</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